

## 놀 권리 보장조례의 이행과 놀이 실행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전라남도 교육청 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Teacher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 for  
Guaranteeing Right to Play and the Practice of Play: Focusing on the Ordinance of the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김정화<sup>1</sup>

Jeong Wha Kim<sup>1</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Ordinance for Guaranteeing Children’s Right to Play’ is has been implemented well and investigate play practice in elementary school.

**Method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319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ollanam-do.

**Results:** First,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n Children’s Right to Play’ is high. And their perception is positive about the effect of the ‘Ordinance on Children’s Right to Play’. Second, among the roles of the Office of Education, play-related training and club support were relatively low. The role of the elementary school director was relatively low in the analysis and disclosure of play performance. Third, the time that children mainly play in school is the middle play time. The sufficiency and safety of play spaces differed by region. Fourth, the contents to be added to the ‘Ordinance’ are securing play space, budget support, and mandatory play time.

**Conclusion/Implications:** In the future, ‘Ordinance on Children’s Right to Play’ should go through a process of improvement so that children’s play is realized as a right.

\*본 논문은 2020년 한국보육  
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  
터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2019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아동옹호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sup>1</sup> 제1저자(교신저자)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jeongwhak@hanmail.net)

**key words** ordinance, right of play, elementary school,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teacher

## I. 서론

놀이는 아동의 권리인 동시에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이다. 또한 놀이는 아동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에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놀이경험을 한 아동은 현재 삶에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화, 2019;

Prilleltensky, 2005). 따라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경험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는 놀이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충분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놀이의 부족은 낮은 아동의 행복지수를 통해 놀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게 되었다(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2014). 이미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우리나라는 아동의 놀 권리법을 법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국가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아동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놀이할 수 있는 놀이혁신 전략을 제시하며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9). 이러한 정부 정책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공표한 이후 놀이 정책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15). 놀이를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도 지속하여 나타났다. 2015년 5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정한 놀이헌장에는 어린이에게 놀 권리가 있으며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 놀이와 관련한 10대 공동정책을 함께 발표하여 놀 권리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16).

교육청을 중심으로 아동의 놀이를 강조하는 것은 놀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가 학교 현장과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놀이는 효과적인 학습 수단이며 놀이가 곧, 학습이 되기도 한다(Hirsh-Pasek, Golinkoff, Berk, Singer, 2008). 이는 놀이와 학습 모두 자발적인 동기를 전제로 할 때 효율적이며 놀이가 갖는 특성 중 구체적인 경험과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분위기가 발견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복적인 놀이 행동은 경험을 심화하고 확대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이숙재, 2019). 놀이의 주요 이점은 인지역량의 발달보다는 내적 동기 유발, 긍정적인 정서발달, 스스로의 통제와 자율성, 주제와 목표의 자유로운 변경 등 통합적인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감정, 사고 및 행동을 더 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동들은 놀면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연습한다(Burghardt, 2011). 아동은 놀 때 잘 배운다. 그러나 놀이가 아동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일 수 있지만, 놀이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Jones & Walker, 2011). 진정한 의미의 놀이가 되려면 놀이를 구조화하지 않아야 하며 성취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놀이를 요구하거나 성인에 의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놀이 속에서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도전해보고,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2014).

초등기의 아동이 놀이에 참여하면 신체적 발달, 정서 발달, 친구관계 등 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매우 많다(김정화, 김갑순, 2019; 유혜경, 2018; 조영제, 송현진, 2005; 정우진, 염두승, 김난현, 김경렬, 2002; Daly & Beloglovsky, 2015; Harber & Schleppe, 2010; Panksepp, 2007). 그러나 놀이를 실생활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학령기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 놀이 환경을 갖추는 것은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에서부터 놀이가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놀이가 보장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한 지역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나타난다. 조례는 본래 구성원의 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이기우, 하승수, 2007)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의 권익과 놀 권리가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놀 권리와 관련한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곳은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2017년 6월 15일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이후에도 강원도 교육청(2017. 7. 7.), 경상남도 교육청(2017. 11. 2.), 울산시 교육청(2017. 11. 9.), 전라북도 교육청(2017. 12. 29.)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주시 서구(2017. 10. 17.), 광주시 남구(2017. 12. 29.), 경기도(2019. 6. 18.), 광주시 동구(2019. 6. 28.), 광주광역시(2019.10.15.) 등의 지자체에서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중 가장 선도적인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 교육청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타 조례와도 공통적인 부분이다. 제1조 목적에 이어 제2조 정의를 보면 놀 권리를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제3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와 관련된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과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중요한 책임과 역할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4조는 지원계획의 내용으로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외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학교의 지원), 제10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조항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실태조사의 방법, 실태조사, 임원, 의견청취, 회의록, 운영세칙 등 총 9개의 조항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법제처, 2018).

조례에 명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실현계획은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이후 전라남도 내의 교육지원청 중 선도 교육지원청을 우선 선정하여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목표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는 학교문화의 조성이며 이에 따른 추진과제

는 첫째, 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편성 운영으로 충분한 휴식 및 놀이시간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둘째, 학교 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놀이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고, 네 번째는 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정된 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을 통해 학교의 놀이 문화 확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별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전라남도 교육청, 2018).

전라남도 교육청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도지역과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별 지원정책까지 마련하여 2년여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례의 이행 여부와 조례의 취지에 따라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례제정 2년차를 맞이한 지금이 조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례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그 이행여부와 학교에서의 놀이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이행사항과 각 초등학교에서의 놀이 실행정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하고 분석할 것이다.

학교에서 아동의 학습과 놀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교사이다. 학교의 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주체이자 아동의 놀 권리를 옹호해주는 지원자의 역할을 교사가 담당하게 된다. 교실 안에서의 놀이활동을 계획하고 아이들이 놀이를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놀이하는 놀이자로서 역할을 하는 담임교사의 놀이 인식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의 아동의 놀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이행과 학교에서의 놀이실행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조례의 제정이 학교에서의 놀이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 조례 이행을 위해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의 놀이계획 및 실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실에서 놀이가 어떻게 일과 운영에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놀이 활동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2년 차를 맞이하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선점을 찾아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이행 여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에서의 놀이 실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교사가 생각하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지역의 초등학교 489개소 중 분교를 제외한 430개소의 교사 1인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430개 초등학교 중 설문에 응답한 교사는 전체 학교의 74.2%인 319개 초등학교의 교사 319명이다. 응답한 교사의 학교 및 개인 배경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근무하는 학교는 시지역이 53%, 군지역이 47%를 차지하였다. 시·군내 행정구역별로 보면 면단위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단위 36.0% 그리고 읍단위 17.9%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초등학교의 규모는 60명을 기준으로 61명 이상 학교는 60.8%, 60명 이하 작은 학교는 39.2%이며, 놀이활동 활성화 지원 비선도학교는 88.4%, 선도학교는 11.6%였다.

응답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 67.4%, 여자 32.6%였으며 연령은 30대가 46.4%로 가장 많았고 교직경력은 6년~10년이 26.0%로 가장 많았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반은 6학년 담임이 23.8%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 교사의 학교 및 개인의 일반적 배경 (N = 319)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시군	시지역	169(53.0)	경력	5년이하	68(21.3)
	지역	150(47.0)		6년~10년	83(26.0)
행정구역	읍단위	57(17.9)		11년~15년	66(20.7)
	면단위	147(46.1)		16년~20년	50(15.7)
	동단위	115(36.0)		21년 이상	52(16.3)
학교규모	60명이하	125(39.2)	담당학년	1학년	27( 8.5)
	61명이상	194(60.8)		2학년	35(11.0)
놀이지원	선도	37(11.6)		3학년	48(15.0)
	비선도	282(88.4)	4학년	58(18.2)	
성별	남자	215(67.4)	5학년	46(14.4)	
	여자	104(32.6)	6학년	76(23.8)	
연령	20대	36(11.3)	기타	29( 9.1)	
	30대	148(46.4)			
	40대	98(30.7)			
	50대 이상	37(11.6)			

### 2. 연구도구

#### 1) 놀 권리 보장 조례 및 놀 권리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행

전라남도 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놀 권리 보장 조례 및 놀 권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조례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조

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청과 초등학교의 역할에 대한 이행,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놀이의 실태, 조례 개선을 위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문항에 대하여 교육청 장학사 2인 및 놀이관련 NGO 대표 1인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받았다. 문항은 연구대상 교사의 학교 및 개인정보 8문항을 포함하여 놀 권리 보장 조례에 관한 인식 4문항, 교육청 및 학교의 이행 여부 8문항, 학교에서의 놀이 실행 14문항, 놀이 활성화 방안 4문항으로 총 38문항이며 기본 신뢰도는 .81이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전라남도 내 분교를 제외한 319개 초등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별 1명씩의 교사가 본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과학데이터센터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자료의 처리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실태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그 외 교사의 인식은 5점 척도, 교육청과 학교의 실행여부는 2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 분석하였다. 그리고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 Duncan 사후분석을 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식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식은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87.1%가 알고 있다, 12.9%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조례의 세부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응답교사의 세부내용 인식은 5점 만점 중 평균 3.16점( $SD = 1.21$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 수준 보다 약간 높은 것이다. 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 2.92, p < .05$ ). 표 2를 보면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교사와 16년-20년 된 교사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결과 조례의 세부내용은 16년~20년 된 교사( $M = 3.50, SD = 1.25$ )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5년 이하의 교사( $M = 2.84, SD = 1.17$ )가 가장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 = 3.31, p < .05$ ). 교사의 연령에 따라서 20대 교사와 40대 교사 간에 차이를 보였고, 사후분석결과 조례의 세부내용은 40대 교사( $M = 3.41, SD = 1.20$ )가 가장 잘 알고 있고, 20대 교사( $M = 2.69, SD = 1.22$ )가 가장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교사의 경력, 연령에 따른 조례의 세부 내용 인식 차이

	경력	N	M	SD	F	
경력	5년 이하	68	2.84 <sup>a</sup>	1.17	2.92*	
	6년-10년이하	83	3.04 <sup>ab</sup>	1.12		
	11년-15년	66	3.36 <sup>bc</sup>	1.25		
	16년-20년	50	3.50 <sup>c</sup>	1.25		
	21년 이상	52	3.20 <sup>abc</sup>	1.25		
연령	20대	36	2.69 <sup>a</sup>	1.22	3.31*	
	30대	148	3.10 <sup>ab</sup>	1.15		
	40대	98	3.41 <sup>b</sup>	1.20		
	50대		37	3.19 <sup>ab</sup>		1.40

\*  $p < .05$ .

조례의 시행(2018.1.1.) 이후 학교에서의 놀이가 더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 중 평균 3.70점( $SD = 1.05$ )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3.76점( $SD = 1.07$ )으로 나타났다. 표 3과 같이 조례시행 놀이 활성화 및 놀 권리 보장 효과는 보통의 수준보다는 더 높은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표 3. 조례시행 이후 학교에서의 변화

(N = 319)

구분	M	SD
조례시행 이후 놀이활성화 정도	3.70	1.05
조례시행 이후 놀권리 보장 정도	3.76	1.07

조례 제정 및 세부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조례 효과에 대한 인식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과 조례 시행 이후 놀이 활성화( $r = .39, p < .01$ )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과( $r = .30, p < .01$ )는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식과 조례 시행 이후 놀이 활성화( $r = .50, p < .01$ )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과( $r = .51, p < .01$ )에서도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조례 제정과 세부내용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놀이 활성화와 놀 권리 보장의 효과가 있다는 인식 높았다. 결과적으로 조례시행 이후 조례가 놀이 활성화와 놀 권리 보장에 효과가 있었다는 인식은 조례의 제정을 알고 세부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표 4. 교사의 조례인식과 조례 효과에 대한 상관관계

	구분	조례제정	조례세부내용	놀이활성화	놀권리보장
조례인식	조례제정	1	.41**	.39**	.30**
	조례세부내용	.41**	1	.50**	.51**
조례효과	놀이활성화	.39**	.50**	1	.88**
	놀권리보장	.30**	.51**	.88**	1

\*\*  $p < .01$ .

## 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이행여부

### 1) 교육청(감)의 이행여부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청(감)의 역할은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계획,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청(감)의 이행여부를 알아 본 결과를 보면 표 5와 같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놀이활동 자료를 제공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71.5%가 있다고 하였으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는 62.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놀이 관련 교원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는 그렇다 58.6%, 전라남도 교육청의 동아리, 연구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2.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놀이관련 연수와 동아리 및 연구회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 교육청의 이행여부에 대한 응답

교육청의 이행여부	예		아니오	
	N	%	N	%
놀이활동 자료의 제공 여부	228	71.5	91	28.5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여부	199	62.4	120	37.6
놀이관련 교원 연수에 참여 여부	187	58.6	132	41.4
동아리 연구회 지원 여부	103	32.3	216	67.7

교육청의 이행여부 중 특히 놀이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은 응답한 교사의 학교가 놀이활동 활성화 선도학교인지 비선도학교인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15, p<.05$ ). 표 6를 보면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비선도학교보다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놀이활동 활성화 선도학교에 대한 놀이활동 프로그램의 지원이 우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놀이활동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선도, 비선도 학교 간 차이

구분	N	M	SD	t
선도	37	1.40	0.49	2.15*
비선도	282	1.22	0.42	

\* $p<.05$ .

### 2) 학교(장)의 이행여부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든 학교는 놀이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응답 교사의 79.9%가 학교에서 놀이활동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으나 19.1%의



학교에서는 놀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놀이활동을 수립하지 않은 74곳 학교의 이유를 보면 몰라서 37명, 현재의 교과과정 내에서는 놀이활동 활성화를 계획하기 어려워서 18명, 추진계획 없이도 필요할 때마다 계획해서 하면 되니까 18명, 학교에서의 놀이활동 활성화가 중요하지 않아서의 응답이 1명으로 나타났다.

놀이계획을 수립하는 학교는 시·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2.57, p < .001$ ). 표 7을 보면 전라남도 내 시 지역에 있는 학교( $M = 1.15, SD = .36$ )가 군 지역 학교( $M = 1.26, SD = .44$ )보다 놀이활동 계획을 더 잘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활동 활성화 선도학교( $M = 1.14, SD = .35$ )와 비선도학교( $M = 1.21, SD = .41$ )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1.06, p < .05$ ). 선도학교가 비선도 학교에 비해 놀이활동 계획을 더 잘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규모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1.17, p < .05$ ). 60명이하의 학교( $M = 1.17, SD = .38$ )가 61명 이상의 학교( $M = 1.22, SD = .42$ )보다 놀이활동 계획을 더 잘 수립하고 있었다.

표 7. 놀이계획 수립에 대한 학교별 차이

	구분	N	M	SD	t
시군차이	시단위	170	1.15	.36	-2.57***
	군단위학	149	1.26	.44	
지원차이	선도	37	1.14	.35	1.06*
	비선도	282	1.21	.41	
규모차이	60명이하	125	1.17	.38	-1.17*
	61명이상	194	1.22	.42	

\* $p < .05$ , \*\*\* $p < .001$ .

놀이활동 계획을 수립한 학교(장)은 이를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놀이활동을 계획대로 운영하며 놀이 활성화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놀이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지 까지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표 8과 같다. 학교(장)이 놀이활동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 중 놀이활동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한다는 응답은 95.1%로 나타났고, 놀이 관련 계획 수립 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응답은 79.9%, 놀이활동을 계획한 대로 운영한 경우는 87.2%로 나타났

표 8. 학교(장)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응답

학교(장)의 이행여부	예		아니오		전체	
	N	%	N	%	N	%
놀이활동 계획의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 여부	255	95.1	13	4.9	268	100
놀이 관련 계획 수립 시 학생의 의견 반영 여부	214	79.9	54	20.1	268	100
놀이활동의 계획대로 운영 여부	233	87.2	34	12.7	267	100
놀이활동 활성화 추진 실적의 자체적 분석 여부	164	61.4	103	38.6	267	100
놀이활동 추진 실적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	90	33.7	177	66.3	267	100

다. 그러나 응답 교사 중 놀이활동 활성화 추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경우는 61.4%, 놀이활동 추진 실적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경우는 33.7%로 나타났다.

학교(장)의 이행여부는 응답한 교사의 학교가 위치한 지역 및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놀이관련 계획수립 시 학생의 의견반영 여부는 놀이활동 활성화 선도학교와 비선도 학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1.70, p < .001$ ).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1.11, p < .05$ ). 결과적으로 놀이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의견수렴이 더 잘 된 학교는 비선도학교( $M = 1.22, SD = .41$ )보다 선도 학교( $M = 1.09, SD = .30$ )가, 61명 이상 학교( $M = 1.22, SD = .42$ )보다는 60명 이하( $M = 1.17, SD = .38$ )의 작은 학교였다.

놀이활동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 = 3.51, p < .05$ ). 사후분석 결과 면단위 지역의 초등학교( $M = 1.18, SD = .38$ )가 읍( $M = 1.13, SD = .34$ )과 동지역의 초등학교( $M = 1.06, SD = .24$ )보다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는 놀이활동 활성화 선도학교와 비선도 학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1.81, p < .001$ ). 선도학교가 비선도학교에 비해 실적에 대한 자체 분석을 더 잘하고 있었다. 또한 추진실적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군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1.45, p < .01$ ). 전라남도 내 군 지역에 있는 학교( $M = 1.62, SD = .49$ )가 시 지역 학교( $M = 1.70, SD = .46$ )보다 놀이 실적을 더 잘 공개하고 있었다.

표 9. 학교(장)의 이행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	N	M	SD	t/F
의견수렴여부	선도	33	1.09	.30	-1.70***
	비선도	235	1.22	.41	
	60명이하	107	1.17	.38	-1.11*
	61명이상	161	1.22	.42	
계획대로여부	읍단위	45	1.13 <sup>a</sup>	.34	3.51*
	면단위	123	1.18 <sup>b</sup>	.38	
	동단위	99	1.06 <sup>a</sup>	.24	
자체분석여부	선도	33	1.24	.44	1.81***
	비선도	234	1.41	.49	
누리집공개여부	시지역	150	1.70	.46	1.45**
	군지역	117	1.62	.49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의 놀이실행

전라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따라 각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놀이 실행의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놀이시간

연구대상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주로 놀이하는 시간은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간놀이시간으로 6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점심시간 17.6%, 수업 중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9.1%, 쉬는 시간 6.0%, 아침 수업 시작 전 3.1%, 수업 종료 후 하교 전까지 0.3%, 놀이시간이 별도로 없다가 0.3% 순으로 나타났다. 학급에서 실행하는 1회 놀이 소요시간은 21분-40분 50.2%, 10분-20분 40.4%, 10분 이내 6.3%, 41분 이상 3.1% 순으로 놀이의 1회 소요시간은 21분-40분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놀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 2회 27.6%, 매일 24.8%, 주 1회 20.4%, 주3회 16.9%, 주4회 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급에서의 놀이시간

구분		N	%	구분		N	%
놀이시간	아침 수업 전	10	3.1	1회놀이시간	10분 이내	20	6.3
	수업 중	29	9.1		10분~20분	129	40.4
	쉬는 시간	19	6.0		21분~40분	160	50.2
	중간놀이시간	203	63.6		41분이상	10	3.1
	점심시간	56	17.6	놀이 횟수	주 1회	65	20.4
	하교 전	1	.3		주 2회	88	27.6
	놀이시간없음	1	.3		주 3회	54	16.9
					주 4회	33	10.3
			매일	79	24.8		

2) 놀이공간

연구대상 교사의 학교 놀이공간에 대한 질문에서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놀이공간이 충분하고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평균 2.84점( $SD = 1.06$ )이 나왔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단위 학교 놀이공간의 충분성과 안전성은  $M = 2.68$ ( $SD = 1.00$ ), 면단위 학교는  $M = 3.10$ ( $SD = 1.08$ ), 동단위 학교는  $M = 2.57$ ( $SD = 1.00$ )이었다. 놀이공간의 충분성과 안전성은 읍·면·동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 = 9.01$ ,  $p < .001$ ), 사후분석결과 면단위 지역 학교의 놀이공간이 읍, 동단위 지역의 학교보다 충분성과 다양성이 더 높았다. 놀이 공간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6.97$ ,  $p < .01$ ). 60명 이하 작은 학교 놀이공간의 충분성과 안전성은  $M = 3.03$ ( $SD = 1.11$ ), 61명 이상의 학교는  $M = 2.71$ ( $SD = 1.11$ )로 학교규모가 61명 이상 학교보다 60명 이하 학교가 놀이공간의 충분성과 안전성이 더 높았다.

표 11. 놀이공간의 충분성과 안전성 정도

	구분	N	M	SD	t/F
지역차이	읍단위	57	2.68 <sup>a</sup>	1.00	9.01***
	면단위	147	3.10 <sup>b</sup>	1.08	
	동단위	115	2.57 <sup>a</sup>	1.00	
규모차이	60명이하	125	3.03	1.11	6.97**
	61명이상	194	2.71	1.02	

\*\* $p < .01$ , \*\*\* $p < .001$ .

아동이 주로 놀이하는 장소에 대한 응답 결과를 표 12에서 보면 교실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강당(체육관) 27.9%, 운동장 21.9%, 별도의 놀이 공간 3.8%, 학교와 인접한 자연 공간(공원 등) 1.6%, 복도 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지역 초등학교는 교실에서의 놀이가 51.2%로 가장 많았고 군 지역 초등학교도 교실에서의 놀이가 35.6%로 많긴 하였으나 강당(체육관)의 사용(34.2%)과 운동장 사용(25.5%)이 시 지역 학교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읍·면·동에 따라서 살펴보면, 면단위 지역 학교는 강당(체육관)에서의 놀이비율이 38.8%로 높았고 읍·동 단위 초등학교는 교실에서의 놀이비율이 각각 49.1%, 53.0%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시 지역, 읍단위, 동단위 학교의 교실에서의 놀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군 지역, 면단위 지역의 학교에서는 교실, 운동장, 강당(체육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놀이가 다 많이 나타났다.

표 12. 학급별로 놀이하는 공간의 차이

구분	교실		복도		운동장		강당 (체육관)		인접자연 공간		별도의 놀이공간		전체	
	n	%	n	%	n	%	n	%	n	%	n	%	N	%
시지역	87	51.2	2	1.2	32	18.8	38	22.4	4	2.4	7	4.1	170	100
군지역	53	35.6	1	0.7	38	25.5	51	34.2	1	0.7	5	3.4	149	100
읍단위	28	49.1	0	0.0	16	28.1	11	19.3	0	0	2	3.5	57	100
면단위	51	34.7	2	1.4	30	20.4	57	38.8	2	1.4	5	3.3	47	100
동단위	61	53.0	1	0.9	24	20.9	21	18.3	3	2.6	5	4.3	115	100

#### 4.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의 개선 내용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조사·분석하였다. 우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생각하는 것은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공간 확보가 38.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놀이활동 및 놀이시간 반영이 35.7%, 놀이 물품 구입,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확보가 18.5%,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교직원 교육 필요가 4.7%, 학교에서의 놀이에 대한 학부모의 협조가 2.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놀이 활성화를 위해 놀이관련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응답교사의 36.4%가 새로운 놀이 공간을 추가 마련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놀이 공간의 안전관리 강화와 보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응답 22.9%, 놀이물품 및 놀이 자료 구입 22.9%, 놀이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9.7%, 교사 연수 등 연구 5.3%, 학부모의 놀이 인식 개선교육 2.8% 순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교육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놀이관련 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실제 놀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한 놀이 환경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16.3%,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놀이활동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 12.9%, 교사 대상으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11.6%, 학교별 우수 놀이활동 사례 공유 6.0%, 교사의 직접적

인 놀이활동 체험 5.3%, 학교 관리자의 놀이 인식개선을 위한 별도교육 2.8% 순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개선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놀이 공간 확보 및 기존 놀이 공간의 안전을 위한 개보수가 33.2%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놀이 관련 예산의 확대편성 및 구체적 지원계획은 24.5%, 학교 일과 중 놀이시간 확보에 대한 지침 의무화는 17.9%, 놀이활동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사 연수기회 확대 8.8%,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8.8%, 학부모의 놀이 인식개선 교육 및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 5.0%, 조례 내용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1.5%, 각 조례 조항 내용의 권고 사항 의무화 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조례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N	%
<b>놀 권리 증진 방법</b>		
학교 교육과정에 놀이활동 및 놀이시간 반영	14	35.7
놀이 물품 구입,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 확보	59	18.5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교직원 교육 필요	15	4.7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공간 확보	123	38.6
학교에서의 놀이에 대한 학부모의 협조	8	2.5
<b>놀이관련 예산 지원 우선 집행 내용</b>		
새로운 놀이 공간 추가 마련을 위한 예산	116	36.4
기존 놀이 공간 안전관리 강화와 보수를 위한 예산	73	22.9
놀이물품 및 놀이 자료 구입을 위한 예산	73	22.9
교사 연수 등을 위한 연구예산	17	5.3
학부모의 놀이 인식 개선교육 예산	9	2.8
놀이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예산	31	9.7
<b>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b>		
교사 대상으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37	11.6
실제 놀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144	45.1
안전한 놀이 환경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52	16.3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놀이활동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	41	12.9
학교별 우수 놀이활동 사례 공유	19	6.0
교사의 직접적인 놀이활동 체험	17	5.3
학교 관리자의 놀이 인식개선을 위한 별도교육	9	2.8
<b>조례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b>		
학교 일과 중 놀이시간 확보에 대한 지침 의무화	57	17.9
놀이관련 예산의 확대편성 및 구체적인 지원 계획	78	24.5
놀이활동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사 연수 기회 확대	28	8.8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28	8.8
놀이 공간 확보 및 기존 놀이 공간의 안전을 위한 개보수	106	33.2
학부모의 놀이 인식개선 교육 및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	16	5.0
각 조례 조항 내용의 권고사항 의무화	1	0.3
조례 내용에 대한 홍보 방안마련	5	1.5
계	319	100.0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학교에서의 놀이를 활성화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의 이행여부와 초등학교에서의 놀이가 실행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 교육청 조례 제정에 대한 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조례 제정을 모르고 있는 교사가 있었으며 조례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를 활성화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시에서도 조례 제정과정에 교사들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논의나 공유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과 같은 한계를 갖지 않기 위해서(강명숙, 2012)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를 공유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조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 등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교육청과 학교(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육청의 지원계획은 놀이 관련 활동자료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의 보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도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왔던 계획은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었던 교원의 연수기회를 늘리고 동아리, 연구회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연구회, 동아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

또한 학교(장)의 역할 중 놀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놀이활동을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고 놀이활동을 계획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하지 않거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동의 놀이권과 함께 아동의 참여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리의 인정과 함께 학교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김젤나, 이재연, 2007). 또한 학교(장) 역할의 이행은 학교의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동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아동의 누릴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아동의 놀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김정화, 2019). 따라서 교육청의 지원은 학교간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조례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에서의 놀이실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 놀이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이 공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지역 간, 학교 규모 간 공간의 충분성과 다양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시지역과 읍·동 지역의 학교 그리고 61명 이상의 학교에서 놀이공간의 부족이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놀이장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로 교실에서 놀이하는 비중이 높았다. 교실에서의 놀이는 운동장에서의 놀이보다 활동적이지 못하다. 학교에서의 운동장 여부가 아동의 일상적 활동을 높이고 친구관계 등 사회성 발달

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박현선, 2020; Anthamatten, Brink, & Lampe, 2011)를 고려하여 교실 밖에서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놀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장기적으로 공간을 새롭게 확장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존의 놀이 공간을 개보수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조례의 개선을 위한 교사의 의견은 학교에서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공간 확보가 가장 높게 나왔다. 놀이 관련 예산도 새로운 놀이 공간을 추가 마련하고 기존 놀이 공간의 안전관리 강화와 보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놀이 활성화를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놀이가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론 중심 수업보다는 실제적인 교실에서의 놀이활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조례의 추가내용을 보면 학교는 학생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한다는 점, 놀이관련 예산을 확대·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점, 학교 일과 중 놀이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우선순위로 나왔다. 이는 학교에서의 놀이공간과 놀이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과도 같은 내용이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4; 황옥경, 김정화, 명준희, 2019). 현재 조례의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학교의 재량에 따라 놀 권리가 잘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듯이 학교 일과 중 놀이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문구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지역 내 초등학교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온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향후 조례는 아동의 놀이가 권리로서 실현되도록 개선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놀이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초등학교 아동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라남도 교육청의 조례를 대상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의 이행과 실행이 연구되어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적 한계를 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법률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역별 조례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는 조례 시행 이후 아동이 충분히 놀이하고 있는지 어떻게 놀이하고 있는지 아동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강명숙 (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5(2), 1-15.
- 관계부처합동 (2015). **제1차(‘15~’19) 아동정책 기본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합동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세종: 보건복지부.
- 김정화, 김갑순 (2019). 초등학교 아동의 놀이대상과 놀이유형별 소요시간이 친사회적 기술에 미

- 치는 영향. **코칭연구**, 12(3), 55-70. doi:10.20325/KCA.2019.12.3.55
- 김정화 (2019). 농촌지역 아동의 놀이충분성과 놀이만족도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9), 625-633. doi:10.35873/ajmahs.2019.9.9.054
- 김젤나, 이재연 (2007).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와 적응과의 관계, **아동과 권리**, 11(2), 167-185.
- 박현선 (2020). 놀이친화적 환경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놀이공간 조성과의 지역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9(2), 175-201. doi:10.24300/jkscw.2020.6.69.2.175
- 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2014).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유혜경 (2018). 신체적 놀이활동이 초등학생의 건강 관련 체력과 신체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기우, 하승수 (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이숙재 (2019). **영유아 놀이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16. 4). **전국 시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정책 추진현황**. 어린이 놀 권리 보장, 학교가 나서자 자료집, 서울.
- 전라남도교육청 (2018. 3). 2019.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 <https://www.jne.go.kr/sse/na/ntt/selectNttInfo.do?mi=796&bbsId=385&nttSn=1729715>에서 2019년 05월 1일 인출
- 법제처 (2018. 1).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gubun=KLAW&ordinSeq=1290579&viewCls=ordinInfoP &conDatGubunC=0&urlMode=ordinScJoRltInfoR&ordinId=2173796&vSct=%EB%86%80 +%EA%B6%8C%EB%A6%AC &chrClsCd=010202&lGovOrgCd=849>에서 2019년 05월 1일 인출
- 정우진, 염두승, 김난현, 김경렬 (2002). 초등학생들의 놀이활동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2(1), 281-290.
- 조영제, 송현진 (2005). 놀이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1(1), 141-154.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4). **대한민국 아동을 말한다: ‘아동의, 아동에 의한, 아동을 위한’ 2014 어린이 연구원(Greeny) 연구보고서**.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황옥경, 김정화, 명준희 (2019).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학교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초점집단 면접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8), 286-294. doi:10.5762/KAIS.2019.20.8.286
- 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2014). **한국 아동의 놀 권리 현주소와 대안**.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 Anthamatten, P., Brink, L., Lampe, S., Greenwood, E., Kingston, B., & Nigg, C. (2011). An Assessment of Schoolyard Renovation Strategies to Encourage Children’s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8(1), 1-9. doi:10.1186/1479-5868-8-27.



- Burghardt, G. M. (2011). Defining and recognizing play. In A. D. Pellegrini (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development of play* (pp. 9-18).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Daly, L., & Beloglovsky, M. (2015). Introducing loose parts to preschoolers. *Teaching Young Children*, 9(1), 18-20.
- Jones, P., & Walker, G. (2011). *Children's rights in practice*. London: Sage.
- Harber, V., & Schleppe, S. (2010). Promoting Early Physical Literacy in Alberta. *Well Spring*, 21(4), 1-5.
- Hirsh-Pasek, K., Golinkoff, R. M., Berk, L. E., & Singer, D. G. (2008). *A Mandate for Playful Learning in Preschool: Presenting the Evid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nksepp, J. (2007). Can play diminish ADHD and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the social brain? *Journal of Canad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6(2), 57-66.
- Prilleltensky, I. (2005). Promoting well-being: time for a paradigm shift in health and human service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3, 53-60. doi:10.1080/14034950510033381

논문투고: 20.10.10  
수정원고접수: 20.11.11  
최종게재결정: 20.12.04